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 1518호)에 따라 적용 대상영업자를 추가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 추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1-1부터 1-3까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 추가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84호, 2019. 2. 18 (2019. 2. 18. ~ 2019. 2. 2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제2019-422호, 2019. 2. 11)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식품이 개발 · 생산될 수 있도록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덱스트린 제조시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열여부와 상관없이 갈비부위를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갈비가공품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발효주의 경우 과일 또는 곡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을 구분하여 메탄올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하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 근거가 확인된 미생물 7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현장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미생물 시험법을 개선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의 추가 승인 품목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한적 사용 원료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수산물 3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며 학명, 이명 보완을 통해 식품원료사용 편의성과 식품원료목록 사용의 편리성을 증진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식품 중 옻의 우루시올 동시 시험법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및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 개정[안 제5. 4. 4-6 4) (3), 제5. 4. 4-7 1), 제5. 4. 7. 7-1 6), 제5. 7. 7-2 3) (1), 제5. 12. 12-1 3) (2), 제5. 12. 12-2 4), 제5. 12. 12-2 5), 제5. 16. 16-5 4) (3)]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동물성유지류의 제조시 정제공정을 거치도록 제조 · 가공기준 개정
3) 덱스트린 제조시 전분 또는 곡분 이외에도 다양한 전분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4) 당류가공품의 원료로 벌꿀류 등 다양한 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정의 개정
5)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 · 기준 개정
6) 수분함량이 8%를 초과하는 고형제품은 소스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수분 규격은 삭제하고, 식품유형 정의에 수분함량 기준 추가
7) 갈비부위를 주원료로 양념하거나 단순히 가열처리한 제품도 갈비가공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

소식

품유형 정의 개정

8) 식품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정[안 제5. 14. 14-9 5) (2)]

1) 과일 등을 주원료로 한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필요

2)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을 개정

3) 원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 규격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5), 제2. 4. 6), 제2. 4. 13)]

1) 보존 및 유통기준의 적용 대상 명확화 필요

2) 일반적인 냉장 또는 냉동온도를 적용받는 식품의 범위 명확화

3)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내에 공급하여야 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범위 명확화

4) 냉장보관하여야 하는 세척란은 물로 세척한 달걀로 한정하도록 문구 개정

5)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 해소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제2. 1]

1) 제한적 사용원료를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제한적 원료 사용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화 필요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

3)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마.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및 미생물의 식품원료 등재 및 학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되어 있는 식품원료 등의 목록 정비 필요

2) 지중해담치(Mytilus galloprovincialis), 곳체다슬기(Semisulcospira gottschei), 가시이마쏙(Austinogebia wuhsienweni) 수산물 3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고, Zymomonas mobilis 미생물 1종의 제한적 사용조건을 주류 및 레반 제조로 확대

4) 대두의 이명과 단삼의 학명 수정

5)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안 제2. 3. 8) (1) ①]

1) 과학의 발달 등으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2)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대상물질명과 잔류물의 정의 명확화

3)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겐

소식

티안 바이올렛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

4)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0)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1) 레바미졸, (16) 벤질페니실린, (33) 이버멕틴, (38) 클로산텔, (40) 타일로신, (43) 틸미코신, (44)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54) 노르플록사신, (55) 오플록사신, (56) 페플록사신, (105) 프라지콴텔, (116) 클로술론]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 기준 개정 필요

2)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일반시험법 개정 등 [안 제8. 4. 4.1 4.1.2 라, 제8. 4. 4.3 사. 6), 제8. 4. 4.26 가 5), 제8. 6. 6.9 6.9.3 6.9.3.4, 제8. 7.1 7.1.2 7.1.2.2, 제8. 8.2 8.2.2 8.2.2.1 8.2.2.1.1, 제8. 8. 8.3 8.3.14, 제8. 8. 8.3 8.3.15, 제8. 8. 8.3 8.3.24, 제8. 8. 8.3 8.3.48, 제8. 8. 8.3 8.3.49, 제8. 8. 8.3 8.3.50, 제8. 8. 8.3 8.3.55, 제8. 8. 8.3 8.3.69, 제8. 9. 9.16, 제8. 10. 10.1 10.1.5, 제8. 10. 10.1 10.1.11, 제8. 10. 10.1 10.1.12, 제8. 10. 10.1 10.1.13, 제8. 10. 10.1 10.1.14]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버터와 아이스크림류의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제조방법 개선

3) 액란제품의 살모넬라 검사에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4) 농산물의 다종농약다성분 시험법과 축산물의 항균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대상성분 확대하여 개정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법 8종 개정

6) 식품 중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개정

7)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의 VCO01981-5(옥수수) 등 18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시험법 추가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타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및 문구정비[안 제1. 2. 9), 제1. 4. 2), 제2. 1. 1) (16), 제2. 3. 2) (1), 제2. 3. 9) (2) ⑨, 제5. 1. 1), 제5. 1. 4) (4), 제5. 2. 2-1 3) (1), 제5. 2. 2-2 3) (1), 제5. 12. 12-2 5) (6), 제5. 17. 7-1 3) (3), 제8. 2. 2.1.1 2.1.1.1 나. 2), 제8. 2. 2.1.2 다. 2) 다), 제8. 4. 4.4 4.4.1 24), 제8. 4. 4.4 4.4.2 8), 제8. 5. 5.3 5.3.2 가. 1), 제8. 5. 5.3 5.3.2 가. 2), 제8. 5. 5.3 5.3.2 가. 3), 제8. 5. 5.3 5.3.2 가. 4), 제8. 5. 5.3 5.3.2 나, 제8. 7. 7.3 7.3.1 7.3.1.2 가, 제8. 7. 7.3 7.3.1 7.3.1.4 가, 제8. 7. 7.3 7.3.1 7.3.1.5 가, 제8.

소식

7. 7.3 7.3.1 7.3.1.7 마. 1), 제8. 7. 7.3 7.3.2 7.3.2.5 마. 1), 제8. 7. 7.3 7.3.2 7.3.2.25 마. 1), 제8. 7. 7.3 7.3.2 7.3.2.27 마. 1), 제8. 8. 8.1 4), 제8. 8. 8.2 8.2.2 8.2.2.1 8.2.2.1.1 8), 제8. 8. 8.3 8.3.23 8.3.23.2 1), 제8. 8.3.116 6) 라, 별표 6 중 (19), (59), (66), (80)]

1) 허용외 타르색소의 기준 · 규격 적용범위 신설
2) 「정착성 수산동식품 생산해역의 등급설정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이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으로 변경되어('18.5.29) 생식용 굴을 생산할 수 있는 해역의 수질기준에 대한 관련고시 명칭 및 수질기준 개정
3) 이물 규격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문구 개정
4) 식물성유지류 중 설정되지 않은 규격에 대한 시험방법 항목 삭제
5) '식품첨가물공전'의 마요네즈에 대한 안식향산 등 보존료 사용기준 반영
6) 알가공품 제조시 물세척하지 않은 식용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척하여 사용도록 문구 개정
7) '계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는 '달걀'로 용어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가) 공고 제2018-488호, 2018. 11. 29.(2018. 11. 29. ~ 2019. 1. 30.)
나) 공고 제2019-65호, 2019. 1. 31.(2019. 1. 31. ~ 2019. 2. 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19. 2. 19.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9. 2. 22.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서면) : 2019. 2. 21. ~ 2019. 2.2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3846호, 2018. 11. 27. 및 제2019-280호, 2019. 1. 28.)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5호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 2. 3. 제정, 2016. 2. 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동 고시의 규정을 정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9. 2. 11 ~ 2019. 3. 4)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비대상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 유예기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HACCP 업체의 상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구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 (안 제4조제3항)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안 제15조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9. 1. 22. ~ 2019. 2. 11.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19. 1. 7.)

소식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2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업체 신규 등록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용량 검사 주체를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업체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확인 규정 신설(안 별표 10)

1) 수출업소 코드가 중복 등록 되어 있을 경우 부적합 수입수산물 관리대상에서 해당 수출업소 누락 우려
2) 수출업체에서 신규등록 요청시 기존 등록업체 중복 여부 확인토록 규정 명문화
3) 담당공무원의 중복등록여부 확인을 통해 수출업체 적정 관리 가능

나.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개선(안 별지 제7호)

1) 현재 수입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가 수입관리부서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방청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필요
2) 수산물 내용량 검사를 지방청 상황에 따라 수입관리부서 또는 분석센터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3)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선정의 효율성 제고

다.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 점검결과 통보서 등 서식 신설(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별지 제9호, 안 별지 제10호)

1)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동일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 초래
2) 업무상 타 규정(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있는 관련 통보서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동 고시에 관련 서식 신설
3) 서식 확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별표2)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 개정고시에 따른 변경 조항 정비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변경된 조항을 고시에 수정하여 반영
3)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정비로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25호, 2019. 1. 16 (2019. 1. 16 ~ 2019. 2. 18)
2) WTO 통보(2019. 1. 18 ~ 2019. 3. 19)
3)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18 - 4235호(2019. 1. 4)

소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4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안 제2조)

1) 인용한 법률 조문을「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9. 2. 26. ~ 2019. 3. 1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19. 2. 21.)

소식 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8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정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

1) 현재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083호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소식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9호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이나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물질은 식품, 용기, 의약품, 화장품, 공산품, 물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 · 흡입 · 흡수될 수 있으나, 그동안 개별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하여 왔기 때문에 동일한 유해물질이 전체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었음. 또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은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여러 제품, 경로를 통해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한 반복적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명 및 고시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1)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외에도 독성시험 실시,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고시명을「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고시의 제정 목적을 "위해평가 및 위험평가의 과학적, 객관적 수행을 위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서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위해요소의 종합적인 위해성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평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증진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1)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지명철회, 제척 · 회피, 수당 등 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 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4조 제3항 · 제4항, 제6조)

다.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1)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개별법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축산물, 화장품, 농수산물 등에서 사람이 섭취 · 투여 · 접촉 · 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1조)

2)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식품 · 의약품 등에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소식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의 경우에 대하여는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12조)

3)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독성시험 및 시험 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안 제13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관련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1)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 함으로써 수집 · 분석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

2)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자와 소비자에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에 대한 교육 · 홍보를 함으로써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자 함 (안 제18조, 제19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17호 (2019. 3. 6. ~ 2019. 3. 26.)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제2019-726호, 2019. 3. 6.)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